### [서식 예]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(혼인 불합의)



## 소 장

원 고 이 ○ ○ (주민등록번호)

등록기준지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주소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피 고 텐  $\triangle \triangle \triangle$  (TEN.  $\triangle \triangle \triangle$ )

19○○년 ○월 ○일생, 여

국적: 카자흐스탄

최후 주소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#### 혼인무효확인청구의 소

## 청 구 취 지

1. 가. 주위적 청구

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0. 0. 0. 00시 00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

나. 예비적 청구

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 청 구 원 인



- 1. 원고는 19○○. ○.경부터 □□□ 교회에 다니다가 □□□에서 주최하는 국제 합동결혼식절차를 통하여 20○○. ○. 한국 ◎◎회관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의 피고와 결혼식을 거행하고, 20○○. ○. ○. ○○시 ○○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피고와 부부로 되어 있습니다.
- 2. 그런데 원고는 위 결혼식 이전에는 피고를 만나 본 사실이 없고 서로 사진만 본 상태에서 □□□에서 정해주는 절차에 따라 피고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. 그리고 결혼식 후에도 즉시 혼인생활을 위한 동거에 들어가지 못하는 □□□ 교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떨어져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소재 □□□ 기숙사에서 40일을 지내야 하였고, 그 기간을 도과한 이후에서야 원·피고는 비로소 정식으로 혼인생활에 들어가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.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 결혼식만 올렸을 뿐, 육체관계나 동거 한번 없이 피고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20○○. ○. ○.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.
- 3. 그러나 피고는 위 □□□□의 별거기간을 끝내고 원고와 혼인생활에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던 바로 전날인 20○○. ○. 이. 비자와 여권을 가지고 도망을 가서 지금까지 소재불명상태인바, 출입국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아직 국내 체류 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. 피고의 여권은 원래 원고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가□□□□의 교구장 목사를 통하여 자신의 여권을 돌려 달라고 사정하는 바람에 20○○. ○. ○. 마지못해 피고에게 여권을 주었는데 여권을 받은 바로 다음날 사라진 것입니다.
- 4.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고는 원고와 혼인할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할 목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서 원·피고의 혼인은 혼인 당사자 간에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입니다.
  - 가사 혼인무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,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이혼사유인 "악의의 유기"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.
- 5.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주위적으로는 혼인무효확인을 구하고 예 비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.

# 입 증 방 법



1.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

1.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

1. 갑 제3호증 피고여권사본

1. 갑 제4호증 가출인신고 접수증

1. 갑 제5호증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

1. 갑 제6호증 원고본인진술서

## 첨 부 서 류

1. 소장 부본 1통

1. 위 각 입증방법 각 1통

1. 위임장 1통

1. 납부서 1통

2000년 0월 0일

위 원고 (인)

제출법원	※ 아래참조	관련법규	가사소송법 제22, 23, 24 <b>w</b>
제기권자	(가사소송법 제23조) ·당사자 ·법정대리인 ·4촌 이내의 친족		
상 대 방	<ul> <li>(가사소송법 제24조)</li> <li>·부부의 일방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함</li> <li>·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, 부부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함</li> <li>·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함</li> </ul>		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불복절차 및 기간	· 항소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 ·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		
비 용	・인지액 : 20,000원(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제1항) ・송달료 : 당사자수×3,700원(우편료)×12회분		
혼인무효 사 유	(민법 제815조) 1.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. 당사자간에 8촌 이내의 혈족(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) 3.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.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		

#### ※ 제 출 법 원(가사소송법 제22조)

- 1.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
- 2.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
-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,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
- 4.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
- 5.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